

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746
번호	

발의자 : 최정훈의원 외 2인

발의일자 : 2002. 3. 4.

1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결산검사위원회선임(안 제1조)

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(검사위원회선임)

4. 본 문 : 붙임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46조 다음에 “제46조의 2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,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46조의 2 ----- ----- ----- -----</p>